

●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6-16호

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3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5월 06일

태안해양경찰서장

(태안해양경찰서)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「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」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
- 나.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, 적합성·타당성 검토
- 다. 분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신설

2. 주요내용

가. 재검토 기한 설정

-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로 변경

나. 부칙 변경 및 신설

- 「해사안전법」 분법으로 인한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신설('23. 7. 25.)로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및 종전 고시의 폐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신설

구분	현행(~에서)	변경(~으로)
조문	「해사안전법」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	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
재검토 기한	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	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(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
부칙	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	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 2023-14호는 폐지한다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5월 20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(해양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

- 1) 우편 또는 FAX 등(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-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)
 - 전 화: 041-950-2351(순경 이정룡), FAX: 041-950-2948
 - 전자우편: lee9898@korea.kr
- 2)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(순경 이정룡, 041-950-23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